

학생단체의등록과활동에관한규정

1996.10.01.제정 2001.03.01.일부개정 2004.03.01.일부개정 2006.08.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학생·장학봉사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생단체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 대학교 학생들이 개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바탕으로 학생단체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능력을 함양하고 애교의 정신을 더욱 고취하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 2006.8.1.)

제2장 학생단체

제 2 조 (학생단체의 정의) 학생단체라 함은 본 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학생모임, 동아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등록요건)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체의 활동목적이 학칙 및 학생회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단체의 구성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4.3.1.)
3.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낙을 받아야 한다.
5. 학생의 단체가입은 1인 1개 단체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등록절차)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취임승낙서 및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4.3.1.)
3. 회칙
4. 대표서약서
5. 사업계획서
6. 회원명단
7. 발기인명단(개정 2004.3.1.)
8.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신설 2004.3.1.)
9. (삭제 2004.3.1.)

제 5 조 (승인) ①제4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한 학생단체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단체는 한 학기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승인될 수 있다.

제 6 조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해당단체의 추대를 받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2개 이상 단체에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소속단체의 공식행사에 가능한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책임지도 한다.
2. 지도교수가 출장, 해외연구 등으로 인하여 학생단체지도를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 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 2011.4.18, 2012.8.1.)
3. 지도교수가 사임한 학생단체는 사표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취임승낙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제 7 조 (임원선출) 단체의 임원선출, 임기, 결원시 보선 등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선출된 명단은 학생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제 8 조 (재정)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제 9 조 (단체활동) ① 모든 행사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집회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1.4.18, 2012.8.1.)

- ② 학구에 전념해야 할 기간 또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비학구적인 행사를 지양한다.
- ③ 야간옥외집회는 학교의 자연환경보호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허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견서를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4.3.1.)
- ④ 모든 행사에 필요한 공고문(포스터, 현수막) 및 기타 유인물을 공고 또는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는 학생처장의 원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 ⑤ 행사공고에 필요한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⑥ 강의실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단체는 각 행사의 완료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

제10조 (활동기간) 승인된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며,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내에 계속활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제11조 (변경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변동된 사항을 학생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제12조 (활동의 제한 및 금지) 학생단체의 활동이 학칙 및 본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단체의 해산
2. 일정기간의 활동정지
3. 기타 교육상 필요한 조치

제13조 (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4.3.1.)

1. 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04.3.1.)
2. 학생회칙 및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04.3.1.)
3.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신설 2004.3.1.)
4. 지도교수사임서가 수리된 이후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설 2004.3.1.)
5. 본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신설 2004.3.1.)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할 수

있다.(신설 2004.3.1.)

③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사유서와 지도교수의견서를 첨부,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3.1.) (개정 2011.4.18, 2012.8.1.)

제3장 집 회

제14조 (집회신청) ①학생단체가 교내외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행사개최 5일전에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홍보물 등을 첨부한 집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단위의 행사인 경우 학과학생대표가 학(과)장을 경유한 집회허가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 대학단위의 행사인 경우 대학학생대표가 학장을 경유한 집회허가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3. 동아리 및 기타단체의 경우 지도교수를 경유한 집회허가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②학생단체등록시 연간(학기별)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정기집회로서 일괄승인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집회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의견서)

본인은 동명대학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단체(동아리)지도 교수직에

지도내용

1. 본 단체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
2. 소속단체 활동에 관한 지도와 확인
3. 각종 집회행사의 책임지도와 확인
4. 학생 신상문제에 관한 개별지도

기타 의견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연락처 : 051- -)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

